#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5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조정훈·박충권·강선영

정성국・최수진・조경태

김용태 · 김기현 · 김대식

서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

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신설).

#### 법률 제 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학교로 본다.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 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u>&lt;단서</u>	<u>다만,</u>		
<u>신설&gt;</u>	마목의 경우에는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학교로 본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대안교육기관</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